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8
----------	------

제출일자 : 2024. 3. 1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제4차 문화도시 지정(22. 12. 6.)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전 제정된 본 조례의 문화도시 "지정"의 조문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기존 위원회의 기능이 문화도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로 되어있어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문화예술분야 관련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고,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도시의 "조성"을 "지정"으로, "지정"을 "조성"으로 변경(안 제4조제5항)
- 문화도시의 "지정"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 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심의하거나 자문"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2항)
- 위원회의 구성 등에 "50명"을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2항)
- 위원의 구성 구체화(당연직, 임명직·위촉직)(안 제9조제3항)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제5호)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4. 2. 5. ~ 2. 26.)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조성”을 “지정”으로 하고, “지정”을 “조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하고, “자문, 참여를 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응하기 위하여”를 “참여 등의 활동을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하거나 자문하기”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호 중 “군수 또는 위원회”를 “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기관·단체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호 중 “제13조제1항 각 호”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의 위촉 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할 때 그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추진단은 제7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도시위원회의 해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제8조에 따른 문화도시위원회는 해산하고 그 위원 전체는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군수의 책무)</p> <p>① ~ ④ (생략)</p> <p>⑤ 군수는 문화도시 <u>조성</u>의 성과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u>지정</u>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p>	<p>제4조(군수의 책무)</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지정</u>----- ----- -----<u>조성</u>----- -----.</p>
<p>제7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p> <p>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u>지정</u>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u>자문</u>, <u>참여</u>를 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u>응하기 위하여</u>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추진단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p> <p>① ----- -----<u>지정 및 그 조성</u>----- -----<u>참여 등의 활동을 할</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 군수는 문화도시 <u>조성</u>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 ----- -----<u>심의하거나 자문하기</u>-----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2. (생략)</p> <p>3. <u>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u></p> <p>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u>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 <u>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u></p> <p>1. ~ 2.(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p>4. ----- -----<u>군수</u>----- -----</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u></p>	<p>① ----- -----<u>15명</u>----- ---- <u>구성한다.</u></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한다.</u></p>	<p>② ----- <u>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u></p>	<p>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략)</p> <p>제12조(위원의 해촉 등)</p> <p>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p> <p><신설></p>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 ③ (생략)</p>	<p>1. <u>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2.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u></p> <p>3. <u>문화예술기관·단체 임원</u></p> <p>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 <삭 제></p> <p>제12조(위원의 해촉 등)</p> <p>4. <u>제13조의-----</u> ----- -----</p> <p>5. <u>위원의 위촉 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위원 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할 때 그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위원회 위원</u>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 -----지정 및 그 조성----- ----- ----- -----.</p> <p>② (현행과 같음)</p>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8.>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